

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지표

2024. 2.

□ 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표

분야	평가항목	세 부 평 가 내 용	배 점	지표 적용	
				전국 단일	지도사
	합 계			1,000	1,000
A. 운영 체계 (200)	소계		200	200	100
	1.운영관리	① 운영규정·업무분장 적정성	50	50	50
		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	50	50	50
	2.인력관리	① 고급인력 보유 노력	50	50	-
		② 역량개발 노력	50	50	-
B. 업무 충실성 (500)	소계		500	500	600
	1. 유해·위험 요인 확인	① 유해·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	100	100	150
		② 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	50	50	50
		③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	50	50	50
		④ 안전활동 사례	50	50	50
	2. 유해·위험 요인 개선	① 개선대책의 적정성	100	100	100
		② 개선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	50	50	50
		③ 기술지도 개선실적	50	50	100
		④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 적정성 등	50	50	50
C. 업무 성과 (300)	소계		300	300	300
	1. 재해감소	① 사망만인율 감소	200	200	200
	2. 만족도 등	① 현장만족도, K2B 시스템 활용	100	100	100
D. 가 감 점	소계		+100~ -100	+100~ -100	+100~ -100
	1. 우수사례	① 기술지도 관리 우수사례, 포상	+100	+100	+100
	2. 행정처분	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	-100	-100	-100

□ 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신·구지표 구성(반영) 요약

분야	평가항목	세 부 평 가 내 용		배 점
	합 계			1,000
A. 운영 체계 (200)	소계			200
	1.운영 관리	① 운영규정·업무분장 적정성 - A.1.1 운영규정 수립의 적정성(기존 배점 30점) - A.1.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(기존 배점 20점)	50	
		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- A.1.2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(기존 배점 40점)	50	
		(기존 배점) 소계	90점	100
	2.인력 관리	① 고급인력 보유 노력 - A.2.2 고급인력 확보 실적(기존 배점 30점) - A.2.3 고용안정(정규직화노력)(기존 배점 20점)	50	
		② 역량개발 노력 - A.2.4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(기존 배점 40점) - A.2.5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(기존 배점 30점) - A.2.6 지도요원의 역량강화 활동 노력(기존 배점 20점)	50	
		(기존 배점) 소계	140점	100
	소계			200
B. 업무충실성 (500)	소계			500
	1.유해·위험 요인 확인	① 유해·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- 2. 유해·위험요인 개선과 연계한 정보 파악의 적정성	100	
		② 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 - B.1.2 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(기존 배점 30점) - B.1.3 기술지도 보고서의 서명 및 전달의 적정성(기존 배점 20점)	50	
		③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 - B.1.6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(기존 배점 30점)	50	
		④ 안전활동 사례 - B.3.2 안전활동 사례(기존 배점 40점)	50	
		(기존 배점) 소계	100점	250
	2. 유해·위험 요인 개선	① 개선대책의 적정성 - B.1.4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적정성(기존 배점 100점)	100	
		② 개선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- B.4.2 감독기관 신고 연계(기존 가점 +40점) - B.4.3 재정지원사업 연계(기존 가점 +40점)	50	
		③ 기술지도 개선실적 - B.1.9 현장 모니터링(기존 감점 -50점)	50	
		④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 적정성 등 - B.1.5 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의 적정성(기존 배점 50점)	50	
		(기존 배점) 소계	150점/+80/-50점	250
	소계			500

C. 업무성과 (300)	소계		300
	1.재해감소	① 사망만인율 감소 - B.2.1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(기존 배점 120점)	200
		(기존 배점) 소계	120점 200
	2. 만족도 등	① 현장 만족도, K2B 시스템 활용 - B.3.1 기술지도 현장 만족도(기존 배점 40점) - B.4.4 기술지도 실적 전산입력 오류(기존 감점 -60점)	100
		(기존 배점) 소계	40점/-60점 100
D. 가 감 점	소계		+100 ~ -100
	1. 우수사례	① 기술지도 관리 우수사례, 포상 - A.5.1 포상실적(기존 가점 +20점) - A.4.1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(기존 배점 10점) - B.3.3 기술지도 우수사례(기존 배점 40점) -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 통보 실적(신설, 가점 +10점)	+100
		(기존 배점) 소계	50점/+20점 +100
	2. 행정처분	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- A.5.2 업무정지 처분 실적(기존 감점 -120점) - A.5.3 시정조치·경고처분 실적(기존 감점 -50점)	-100
		(기존 감점) 소계	-170점 -100

평가지표(기존) 삭제 항목 11개(A.운영체계 5개, B.업무성과 6개)	
A. 운영체계 (5개 항목)	- A.2.1 지도요원 추가 확보 노력(기존 배점 60점) - A.3.1 장비의 유지·관리 적정성(기존 배점 30점) - A.3.2 장비사용 숙지상태(기존 배점 30점) - A.3.3 추가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(기존 배점 40점) - A.3.4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 구축(기존 가점 +10점)
B. 업무성과 (6개 항목)	- B.1.1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의 형평성(기존 배점 40점) - B.1.7 교육지원 횟수의 적정성(기존 배점 20점) - B.1.8 장비 활용의 적정성(기존 배점 40점) - B.2.2 업무상 재해율 감소 성과 (기존 배점 30점) - B.4.1 산재 은폐 및 보고지연 (기존 감점 -100점) - B.4.5 화재·폭발사고 예방 노력(기존 가점 +20점)

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
☐ 평가대상기간은 2023.1.1.~2023.12.31. 기준임. 다만, 평가일정이 변경될 경우 평가 대상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. ☐ 최종 평가결과 확정시기 ○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통보된 평가점수는 최종결과가 아님 ○ 최종 등급결정은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평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
【평가결과 확정 및 공표】 평가 실시 공단 → 기관 ⇒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공단 ↔ 기관 ⇒ 평가운영위원회 거친 후 최종 평가결과 공표 공단 → 고용부 공단 → 기관
☐ 지부(출장소)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 ○ 지부(회)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☐ 최종 평가 결과 운영체계(200점), 업무충실성(500점), 업무성과(300점) 중 가점을 득하더라도 만점을 넘을 수 없음 ※ 평가산식에 의한 부여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(예시: 평가결과가 운영체계(200점), 업무충실성(500점), 업무성과(280점) + 가점 100점 = 1,080점 => 1,000점으로 평가 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관 점검 결과, 업무정지 처분 정도에 따라 최저등급 부여 등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☐ B. 업무충실성 평가 시 원할한 현장 평가 수행을 위하여 기관평가 공고 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협조 요청 공문 배포

운 영 체 계		A. 운영관리(100점)							
1. 운영관리	① 운영규정·업무분장 적정성 (배점: 50점)								
평가기준		평가결과					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				
법인	지도사								
판단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	판단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	☐ 1.0							
판단기준을 8 ~ 9가지 만족한 경우	판단기준을 7가지 만족한 경우	☐ 0.8							
판단기준을 6 ~ 7가지 만족한 경우	판단기준을 6가지 만족한 경우	☐ 0.6							
판단기준을 3 ~ 5가지 만족한 경우	판단기준을 4 ~ 5가지 만족한 경우	☐ 0.4							
판단기준을 3가지 이하 만족한 경우	판단기준을 3가지 이하 만족한 경우	☐ 0.2							
지표정의									
체계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·지침(매뉴얼)의 보유 및 실행 여부 평가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
☐ 평가 방법 ○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규정·지침(매뉴얼) 등을 제출받아 필수사항 반영 및 실행 여부를 평가									
☐ 판단 기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규정·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(10가지 항목)</th> <th>반영(최신화)여부</th> <th>실행여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○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(매뉴얼)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○ 보유장비(법정+추가장비)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④ 보유장비별 검·교정 주기 설정 ○ 법규 등록부 및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법규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⑥ 산안법 관련 제·개정 사항에 대한 법규등록대장 ※ 색인목록으로 기재하여 등록 가능 ○ 조직의 업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⑦ 수행인력의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○ 수행인력의 역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술자격, 경력, 교육 이수 등의 기록관리 및 활용 ○ 기술지도 업무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자체평가 계획 및 기준 ⑩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활동 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규정·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(10가지 항목)	반영(최신화)여부	실행여부	○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(매뉴얼)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○ 보유장비(법정+추가장비)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④ 보유장비별 검·교정 주기 설정 ○ 법규 등록부 및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법규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⑥ 산안법 관련 제·개정 사항에 대한 법규등록대장 ※ 색인목록으로 기재하여 등록 가능 ○ 조직의 업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⑦ 수행인력의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○ 수행인력의 역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술자격, 경력, 교육 이수 등의 기록관리 및 활용 ○ 기술지도 업무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자체평가 계획 및 기준 ⑩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활동		
규정·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(10가지 항목)	반영(최신화)여부	실행여부							
○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(매뉴얼)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○ 보유장비(법정+추가장비)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④ 보유장비별 검·교정 주기 설정 ○ 법규 등록부 및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법규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⑥ 산안법 관련 제·개정 사항에 대한 법규등록대장 ※ 색인목록으로 기재하여 등록 가능 ○ 조직의 업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⑦ 수행인력의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○ 수행인력의 역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술자격, 경력, 교육 이수 등의 기록관리 및 활용 ○ 기술지도 업무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자체평가 계획 및 기준 ⑩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활동									
※ 각 항목별 “반영여부”, “실행여부”를 모두 만족하여야 인정 ※ 만족하는 사항이 없거나 기관의 운영규정·지침(매뉴얼)이 없는 경우 “0점”으로 평가 ※ 지도사 기관의 경우 “⑦,⑧”은 제외하여 평가									
확인사항									
○ 운영규정(매뉴얼, 지침) 등 증빙자료									

운 영 체 계		A. 운영관리(100점)										
1. 운영관리	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(배점: 50점)										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								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							
연간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	필수사항을 모두 반영한 경우	☐ 1.0										
	필수사항 중 1가지 누락된 경우	☐ 0.8										
	필수사항 중 2가지 누락된 경우	☐ 0.6										
	필수사항 중 3가지 누락된 경우	☐ 0.4										
	필수사항 중 4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	☐ 0.2										
평가취지	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기관 운영 내실화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유도		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			
☐ 평가 방법 ○ 사업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필수사항 반영 및 실행 여부를 평가 ※ 사업계획은 매년 작성하여야 하며, 신규 등록기관은 최저 기본점수 부여(0.2/10점)												
☐ 평가 기준 ○ 필수사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한 경우 누락으로 판단 ○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별* 적정성을 확인하여 미흡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* 전년도 실적 분석 ⇒ 문제점 파악 ⇒ 목표 설정 ⇒ 세부계획 수립 ⇒ 실행 ○ 사업계획을 구성원에게 공포 또는 회람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한 단계 하향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필수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기관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(업무상 재해율, 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수립여부)</td> </tr> <tr> <td>② 기술지도 사업장의 재해통계 분석(최근 3년 또는 전년대비 재해분석)</td> </tr> <tr> <td>③ 직원 운용계획(지도요원 활용 및 사업장 분배 계획 수립 여부)</td> </tr> <tr> <td>④ 직원 교육훈련계획(내·외부 교육계획 수립 여부)</td> </tr> <tr> <td>⑤ 장비 활용계획(현장별 장비 활용계획 수립 여부)</td> </tr> <tr> <td>⑥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계획</td> </tr> <tr> <td>⑦ 고객만족도 향상계획</td> </tr> <tr> <td>⑧ 당해연도 사업평가 계획(환류계획 수립 여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필수사항	① 기관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(업무상 재해율, 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수립여부)	② 기술지도 사업장의 재해통계 분석(최근 3년 또는 전년대비 재해분석)	③ 직원 운용계획(지도요원 활용 및 사업장 분배 계획 수립 여부)	④ 직원 교육훈련계획(내·외부 교육계획 수립 여부)	⑤ 장비 활용계획(현장별 장비 활용계획 수립 여부)	⑥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계획	⑦ 고객만족도 향상계획	⑧ 당해연도 사업평가 계획(환류계획 수립 여부)
필수사항												
① 기관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(업무상 재해율, 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수립여부)												
② 기술지도 사업장의 재해통계 분석(최근 3년 또는 전년대비 재해분석)												
③ 직원 운용계획(지도요원 활용 및 사업장 분배 계획 수립 여부)												
④ 직원 교육훈련계획(내·외부 교육계획 수립 여부)												
⑤ 장비 활용계획(현장별 장비 활용계획 수립 여부)												
⑥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계획												
⑦ 고객만족도 향상계획												
⑧ 당해연도 사업평가 계획(환류계획 수립 여부)												
※ 위 필수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며, 이외 필요한 사항은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												
확인사항												
☐ 연간 사업계획서 및 실행 증빙 자료 등												

운 영 체 계

A. 인력관리(100점)

2.인력관리		① 고급인력 보유노력 (배점: 5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평가대상기간내 기술지도 인적자원보유와 역량개발 노력 여부			
지표정의			
기술지도 실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보유와 심사원 취득 등 역량개발 노력 유도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 ○ 국가기술자격증, 심사원증, 임금지급대장, 근로계약서 등 실질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○ 추가 인력은 평가대상 기간 중 1/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고 현장 업무를 수행 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 ☐ 평가 기준			
보유인력의 기술등급(최대 40점)		점수	
고용안정(정규직화) 노력 (최대 10점)			
① 인력기준 해당자 중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,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 학위 보유 *지도사, 기술사는 필수인력(1호 인력 1명)은 평가에서 제외함	15점×인원수	④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의 개별 근로계약서를 제출받아 평가 -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4조 기준 - 법정 등록인력은 상근일 것(월~금 1일 8시간 근무 기준). 다만, 유연근무제, 시간단축제 등의 관련 문서가 있을시 인정 - 정규직 비율 = 정규직 지도요원수/전체 지도요원 수 × 100%	-법정인력 합계 비율 · 100% 10점 · 80%이상 100%미만 5점 · 60%이상 80%미만 3점 · 60%미만 0점
② KOSHA-MS 및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자격, 석사 학위 보유	10점×인원수		
③ 인력기준 해당자 중 안전관련* 국가기술자격 보유(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) *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산업위생, 인간공학, 가스, 소방설비화재감식평가, 방재, 화공	5점×인원수		
소계		소계	
합계			
※ 보유인력의 기술등급: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인원에 한해 인정			
※ 배점은 ①,②,③(최대40점)④(최대10점)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			
※ 지도사기관은 평가제외			
확인사항			
○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, 자격증, 학위증, 교육수료증, 관련 공문, 심사원증 등			

운 영 체 계

A. 인력관리(100점)

2.인력관리		② 역량개발 노력 (배점: 5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평가대상기간내 기술지도 인적자원보유와 역량개발 노력 여부			
지표정의			
기술지도 실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보유와 심사원 취득 등 역량개발 노력 유도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			
○ 국가기술자격증, 심사원증, 임금지급대장, 근로계약서 등 실질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○ 추가 인력은 평가대상 기간 중 1/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고 현장 업무를 수행 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 - 단, 신규 지정인력의 교육 이수 기준 시간은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조정 (예. 이수기준 = 16시간X(9개월/12개월) = 12시간) -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체자에 한해 교육 이수시간 합산 ○ ④인정범위는 소속 직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 관련 내·외부 전문교육* 또는 안전보건학회·세미나 외부 워크샵 참석 역량개발 실적 평가(단 종사자 교육 등 법정 직무 및 의무교육 제외)			
☐ 평가 기준			
보유인력의 역량개발(최대 30점) * 평가년도 내 취득 기준		점수	보유인력의 역량개발 노력(전문화 교육, 최대 20점)
① 인력기준 해당자 중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,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 학위 취득	3점×인원수 (최대 30점)	④ 인력기준 해당자 중 근무자가 내·외부 전문화교육 또는 학회,세미나 등 16시간 이상 인정(온라인의 경우 50%만 인정) - 내부교육은 연 1회 이상(2시간 이상) 이수시 인정 - [종빙자료] 이수증, 참석증, 결재내역 ※ 동일 행사 내 세미나 참석은 최대 6시간 인정	-법정인력 합계 비율 · 100%: 20점 · 80%이상 100%미만: 10점 · 60%이상 80%미만: 5점 · 60%미만: 0점
② 인력기준 해당자 중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 및 기술사 1차 시험 합격,KOSHA-MS 및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자격 취득, 석사 학위 취득	15점×인원수 (최대 30점)		
③ 인력기준 해당자 중 산업기사가 기사 자격 취득 및 안전관련* 국가기술자격 취득 *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산업위생, 인간공학, 가스, 소방설비화재감식평가, 방재, 화공	10점×인원수 (최대 30점)		
소계		소계	
합계			
※ 배점은 ①,②,③(최대30점)④(최대20점)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			
※ 지도사기관은 평가제외			
확인사항			
○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, 자격증, 학위증, 교육수료증, 관련 공문, 심사원증 등			

업무총실성

B. 유해·위험요인 확인(250점)

1. 유해·위험요인 확인

① 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(배점: 100점, 지도사: 150점)

평가기준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
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90% 이상인 경우	☐ 1.0
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80% 이상 90% 미만인 경우	☐ 0.8
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70% 이상 80% 미만인 경우	☐ 0.6
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60% 이상 70% 미만인 경우	☐ 0.4
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60% 미만인 경우	☐ 0.2

지표정의

기술지도를 위한 건설현장의 기본 현황 파악 및 유해·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을 평가

평가내용

☐ 평가 방법

○ 평가년도 기술지도 현장 10개소(50회차) 이상을 선정하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평가

※ 샘플링 현장은 [B.2 ② 기술지도 개선실적]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

○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정 및 내용 누락 여부 확인

샘플링 현장 선정 기준(예시)

①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또는 1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현장

② 건설기계·장비 및 유해·위험물질 사용현장

③ 고위험작업 현장(최근 3년간 사망사고 주요 발생형태(추락,붕괴,낙하 등))

④ 40억원 미만 80%, 4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0%, 120억원 이상(필요 시)

○ 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

☐ 평가 기준

○ 방문현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필수항목별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하는 항목 비율로 평가

- 필수항목에 대한 기술지도가 누락된 경우 “미흡”으로 평가

※ (예시) 샘플링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개일 경우, A 결과보고서 4개, B 결과보고서 5개 적정한 경우 ⇒ (4+5)/12×100 = 75%로 “60점” 부여

< 다음장 계속 >

○ 선정 현장에 필수항목이 해당 없을 시 “적정”으로 평가

구분	필수항목	적정	미흡
합 계			
1	대상사업장 관련 정보(공사종류,세부공정 등 기타사항)		
2	산업재해 발생현황(재발방지 대책 수립 포함)		
3	공중(작업)의 주요 위험요인(위험성 평가 방식 등)		
4	건설기계·장비		
5	위험기계·기구		
6	유해·위험물질		

○ 샘플링 현장에 대하여 기본 정보와 현장 여건이 반영된 유해·위험요인 정보 파악 여부를 평가

< 참고 >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과 필수 지도사항

사망사고 다발 기인물	필수 지도사항	사망사고 다발 기인물	필수 지도사항
① 단부·개구부	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	⑦ 사다리	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
② 철골	철골 인양 전,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	⑧ 달비계	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(구명줄,작업줄)
③ 지붕	안전난간·발판설치 채광창 덮개 설치	⑨ 트럭	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
④ 비계·작업발판	안전난간 설치,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	⑩ 이동식 비계	최상부 안전난간 설치
⑤ 굴착기	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 충돌방지장치 작동 확인	⑪ 거푸집동바리	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
⑥ 고소작업대	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	⑫ 이동식크레인	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

확인사항

○ 방문 현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

업무총실성

B. 유해·위험요인 확인(250점)

1. 유해·위험요인 확인		② 기술지도보고서의 적정성 (배점: 50점)	
평가지표	평가 기준		평가결과
총 점			
기술지도보고서 양식 및 내용 표준화의 적정성 (배점: 30점)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90% 이상		☐ 1.0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80% 이상 90% 미만		☐ 0.8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60% 이상 80% 미만		☐ 0.6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40% 이상 60% 미만		☐ 0.4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40% 미만		☐ 0.2
기술지도보고서의 사업장 통보 실적 (배점: 20점)	사업장 통보 누락이 없는 경우		☐ 1.0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5% 미만		☐ 0.8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5% 이상 10% 미만		☐ 0.6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10% 이상 15% 미만		☐ 0.4
	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15% 이상		☐ 0.2
평가취지			
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양식 및 내용 표준화를 통해 전반적인 기술지도 수준 향상 유도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 ○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(최소 10개소 이상)하여 결과보고서에 필수 반영사항 작성 여부 및 통보 실적을 평가 -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※ 샘플링 현장은 [B.2 ② 기술지도 개선실적]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☐ 평가 산식 ○ 적정정보고서 비율 = $\frac{\text{표준화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}}{\text{샘플링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}} \times 100$			
확인사항			
☐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,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			

☐ 평가 기준

- 보고서 양식에 필수 반영사항 포함 여부 및 기술지도 내용 작성 여부 확인
 - 작성란은 있으나 기술지도 내용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0.5개 인정

필수 반영 사항

① 사업장 개요(사업장 및 현장명, 사업장관리번호(개시번호), 공사 금액 및 기간)
 ② 기술지도 개요(공정물, 현장책임자, 기술지도 회차 등)
 ③ 기술지도 방문 시 유해·위험요인 및 재해예방 대책
 ④ 향후 공중 유해·위험요인 및 재해예방 대책
 ⑤ 사업장 지원현황
 ⑥ 지난 기술지도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

☐ 평가 산식

통보 대상 : 안전보건총괄책임자, 단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 (소장)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하는 자
 - 사업장 담당자 및 소장 서명,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, 전자우편, 모바일 등의 통보여부 증빙 확인
 - 평가 당일 사업장 방문계획에 따라 방문하는 사업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는 제외 (단, 평가 완료시점까지 점검 후 복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)

확인사항

☐ 기관 제출 증빙자료, 기술지도결과보고서, K2B 전산자료 등

$$\text{누락율} = \frac{\text{누락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}}{\text{샘플링 사업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}} \times 100$$

업무총실성		B. 유해·위험요인 확인(250점)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유해·위험요인 확인	③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 (배점: 50점)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 기준		평가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점 (배점 × 평가결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	기술자료 제공 산정표에 따라 부여된 점수 반영	_____점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취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기술자료 제공 유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☐ 평가 방법 ○ 자체 제작한 기술자료 건수(종), 사업장별 배포실적,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 ○ 샘플링(최소 10개소)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자료배포 여부를 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☐ 평가 산식 ○ 기술자료 제공 비율 = $\frac{\text{기술자료 제공 사업장수(중복인정)}}{\text{전체 기술지도 사업장 수}} \times 100$ ○ 기술자료 건수(종): 증빙자료 및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자료 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자체 제작·제공 기술자료 제공 비율</th> <th>1종 이하</th> <th>2종</th> <th>3종</th> <th>4종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업장 80% 이상</td> <td>10</td> <td>25</td> <td>40</td> <td>50</td> </tr> <tr> <td>사업장 60% 이상 80% 미만</td> <td>5</td> <td>10</td> <td>25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사업장 40% 이상 60% 미만</td> <td>3</td> <td>5</td> <td>10</td> <td>25</td> </tr> <tr> <td>사업장 40% 미만</td> <td>0</td> <td>3</td> <td>5</td> <td>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자체 제작·제공 기술자료 제공 비율	1종 이하	2종	3종	4종 이상	사업장 80% 이상	10	25	40	50	사업장 60% 이상 80% 미만	5	10	25	40	사업장 40% 이상 60% 미만	3	5	10	25	사업장 40% 미만	0	3	5	10
자체 제작·제공 기술자료 제공 비율	1종 이하	2종	3종	4종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장 80% 이상	10	25	40	50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장 60% 이상 80% 미만	5	10	25	40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장 40% 이상 60% 미만	3	5	10	25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장 40% 미만	0	3	5	10																								
☐ 평가 기준 ① 기술자료는 책자, 포스터, OPL, 현수막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어야 함 (책자는 구성 내용에 따라 2종으로 인정 가능, 인쇄 또는 E-mail로 배포 제외) ② 인쇄업체를 통해 제작한 것을 원칙적으로 실적으로 인정(세금계산서 확인 등) ※ 단, 기관 내부적으로 제작한 형태의 자료의 경우 50% 인정(책자 또는 바인더 형태 인정) ③ 동영상 등을 USB, File, 기타 전자 형태로 자체 제작·배포한 경우 인정 ④ 고용노동부·공단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배포한 경우 실적 50% 인정 - 단, 명확히 제공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- 보고서에 위탁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맞는 기술자료를 공단 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배송 받도록 구체적인 방법 안내 및 확인 실적 포함 ⑤ 실적이 없는 기관은 '0점' 부여 ⑥ 기술자료 제공현황(배포대상)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샘플링 확인하여 10% 이상 불일치한 경우 산정표 점수의 50% 부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확인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☐ 자체 제작한 기술자료 샘플, 자료배포대장, 기술지도 결과보고서, 세금계산서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업무총실성		B. 유해·위험요인 확인(250점)	
1. 유해·위험요인 확인	④ 안전활동 우수사례 (배점: 50점)		
평가 기준		평가결과	
총 점			
안전활동 우수사례	평가 산식에 따른 점수 부여	_____점	
평가취지			
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 유도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 ○ 평가 대상 기간에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(활동) 실행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			
☐ 평가 산식(우수사례(활동)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) ○ 평가점수 = 우수사례(활동) 실행 건수 x 10점 (최대 50점)			
☐ 평가 기준 우수사례(활동) 평가 기준 ①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·보급한 실적(1종별 1건) ②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캠페인 실적(1회 0.5건, 최대 4회) ③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캠페인 참여(1회별 1건, 최대 2회) ④ 고위험 작업공종 또는 직종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체교육 실시(1회 0.5건) ⑤ 기관 주관으로 안전관련 신문기고 등 언론매체 홍보 실적(1회 0.5건) ⑥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기관 주관으로 안전관련 현수막 게시(1회 0.25건) ⑦ 지자체, 지역, 공단 등에 안전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(1명당 1건) ⑧ 안전보건강조주간 등 안전관련 세미나 발표 건수가 있는 경우(1회 0.5건) ⑨ 건설안전 관련 고용노동부 및 공단 정책회의(본부 회의에 한함) 참여(1회 1건) ⑩ 기타 건설안전 관련 행사 주체 또는 참여 등(1회 0.5건, 최대 2회) ※ 주체 기관의 공식 결과보고서에 참여자로 명시된 경우에 한함			
※ 계획 및 결과에 예산, 대상, 일정, 내용, 사진(결과물)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			
확인사항			
☐ 재해예방 우수사례(활동) 증빙서류, 우수사례 활동 보고서 등			

업무총실성

B. 유해·위험요인 개선(250점)

2. 유해·위험요인 개선

① 개선대책의 적정성 (배점: 100점)

평가기준

평가결과
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

개선대책 적정성 90% 이상인 경우

개선대책 적정성 80% 이상 ~ 90% 미만인 경우

개선대책 적정성 70% 이상 ~ 80% 미만인 경우

개선대책 적정성 60% 이상 ~ 70% 미만인 경우

개선대책 적정성 60% 미만인 경우

지표정의

건설현장 기술지도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정을 파악하여 재해발생 유형에 따른 개선대책의 제시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한다.

평가내용

평가 방법

평가년도 기술지도 현장 10개소(50회차) 이상을 선정하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평가

※ 샘플링 현장은 [B.2 ② 기술지도 개선실적]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

기술지도 현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위험 공정 파악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개선대책 적정성을 평가

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

샘플링 현장 선정 기준(예시)

①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또는 1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현장

② 건설기계·장비 및 유해·위험물질 사용현장

③ 고위험작업 현장(최근 3년간 사망사고 주요 발생형태(추락,붕괴,낙하 등))

④ 40억원 미만 80%, 40억원~120억원 미만 20%, 120억원 이상(필요 시)

평가 기준

평가 산식

아래 적정성 인정기준 ①~④의 적정, 미흡 여부를 판단하고 가중치를 반영

항목별 가중치는 0.1 단위로 차등부여 적용

※ (예시) A현장 “개선대책 적정성 인정기준”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항목별 반영된 가중치 총합을 산출(B현장, C현장..... 동일방식으로 산출)

☞ 1회차 기술지도결과보고서①항목 적정(가중치 0.1), ②항목 적정(가중치 0.3), ③항목 적정(가중치 적용(0.1)), ④항목 적정(가중치 0.2)

⇒ 0.1+0.3+0.1+0.2= 0.7

동일방식으로 2회차 기술지도결과보고서 0.8, 3회차 1, 4회차 0.9

⇒ 가중치 적용 점수 총합 : 0.7+0.8+1+0.9= 3.4, 기술지도결과보고서 4 적정성 : 3.4 / 4× 100 = 85% ⇒ 0.8 × 100점 = 80점

개선대책 적정성 = $\frac{\text{가중치 적용 점수 총합}}{\text{기술지도결과보고서 수}} \times 100$

평가내용

개선대책 적정성 인정 기준

합 계

적정

미흡

가중치

적용

① 공중 재해유형, 대책은 건설현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

② 유해·위험공정 파악에 따라 개선대책 모두 적정한 경우

③ 개선대책(참고)은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

④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 제시의 방법·절차 등이 적정한 경우(위험성평가 기법 등)

합 계

※ 관리적 사항(교육 및 보호구 관련 대책 제시 등)만 제시한 경우는 불인정

※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면피용으로 점검표에 체크하는 방식은 불인정

○ 샘플링 현장에 대한 확인사항은 현장 여건이 반영된 기술지도의 적정성과 유해·위험요인의 발굴과 대책 제시의 과정(위험성평가 등의 안전관리 기법 활용)등을 전반적으로 평가

< 참고 >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과 필수 지도사항

사망사고 다발 기인물

필수 지도사항

사망사고 다발 기인물

필수 지도사항

① 단부·개구부

단부 안전난간 설치
개구부 덮개 고정

⑦ 사다리

안전모 착용
2인 1조 작업

② 철골

철골 인양 전,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
⑧ 달비계

구명줄 안전대 체결
2개 고정점 설치(구명줄,작업줄)

③ 지붕

안전난간·발판설치
채광창 덮개 설치

⑨ 트럭

이동구간 출입통제
전담유도자 배치

④ 비계·작업발판

안전난간 설치,
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

⑩ 이동식 비계

최상부 안전난간 설치

⑤ 굴착기

작업반경 출입통제
후방 충돌방지장치 작동 확인

⑪ 거푸집동바리

시스템동바리 사용
하부 추락방지망 설치

⑥ 고소작업대

안전대 체결
작업대 이탈 금지

⑫ 이동식크레인

인양물 고정 철저
하부 출입통제

○ 참고사항

【개선대책의 적정성】

① 유해·위험요인 및 기술적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을 경우
<구체적인 내용 사례> (위험요인) 외부비계 정면 작업발판 2단에서 벽체 면처리작업 시 개구부 추락위험 ⇒ (대책) 추락위험 개구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불가피 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

② 유해·위험요인을 누락하지 않았을 경우

③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였을 경우
※ 관리적 사항(교육 및 보호구 관련 대책 제시 등)만 제시한 경우는 불인정

확인사항

○ 기술지도 현황,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

- 17 -

- 18 -

업무충실성

B. 유해·위험요인 개선(250점)

2. 유해·위험요인 개선	②-1 개선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< 불량현장 지도 연계율(배점: 30점) >	
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
연계율 4% 이상인 경우		☐ 1.0
연계율 3% 이상 4% 미만인 경우		☐ 0.8
연계율 2% 이상 3% 미만인 경우		☐ 0.6
연계율 1% 이상 2% 미만인 경우		☐ 0.4
연계율 1% 미만인 경우		☐ 0.2

지표정의
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불량 현장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는 원칙 확산

평가내용
☐ 평가 방법 - 공문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한 불량현장 지도 연계 실적 ※ K2b 입력(요청)방식 적용여부는 '23년 시스템 구축완료(예정) 이후 공시

현장점검 법령에 따른 현장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	→	추적관리 지도사항 개선여부 확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	→	고용노동부, 공단 지도 연계 불량현장 패드물점검 요청 기관→ 고용노동부,공단
--	---	---	---	---

평가 기준
○ 평가 산식 $\text{연계율} = \frac{\text{지도 연계 현장수}}{\text{기술지도 현장수}} \times 100$ ※ 소수점 이하 절사 * 기술지도 현장수: 평가기간 동안 6개월 이상 계약 유지 현장 기준 * 지도 연계 현장수: 사업장 기준(동일현장 지도 반복 요청 포함)

연계 대상
① 연계 대상 : 급박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불량현장 ② 급박한 위험요인 지붕 개·보수, 외부도장, 옥상방수, 철거, 리모델링, 사고사망 다발 기인물(지붕, 개구부, 비계[달비계 포함], 이동식 사다리)사용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 추락(작업발판·안전난간·개구부 덮개 불량) 위험

연계 대상					
- 산소결핍, 질식, 중독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불량하게 작업을 할 경우 - 화재, 폭발, 독성가스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- 구조물 노후 등으로 인해 붕괴, 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등 ※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지도사항에 ①위험 작업에 따른 ②위험요인 ③개선대책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함					

○ 기술지도 현장이 100개 이하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“불량현장 고용노동부, 공단 지도 연계율” 적용

기술지도 현장수	연계 지도 갯수에 따른 평가점수				
	1.0	0.8	0.6	0.4	0.2
87개소 ~ 100개소	4개소 이상	3개소	2개소	1개소	-
62개소 ~ 86개소	3개소 이상	2개소	1개소	-	-
37개소 ~ 61개소	2개소 이상	1개소	-	-	-
12개소 ~ 36개소	1개소 이상	-	-	-	-
11개소 이하	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전체 평균 점수 부여				

확인사항
○ K2B 전산 입력 결과, 기관의 기술지도 현장 신고현황 등 증빙자료

업무총실성

B. 유해·위험요인 개선(250점)

2. 유해·위험요인 개선	②-2 개선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< 정부정책 반영률 (배점: 20점) >	
평가기준		평가결과
(재정지원사업 연계 건수) x (2점) [최대 20점]		_____점
평가취지		
재정지원사업 연계실적에 대하여 평가		
평가내용		
☐ 평가 방법 ○ 평가대상기간에 기술지도를 실시한 현장과 보조금 지급완료된 건설업 재정지원 현장을 비교하여 평가 ※ 평가 인정 사업은 공단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기존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업 외 재정지원 사업을 폭넓게 인정 ex)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),(사망사고 고위험 개선(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, 로더,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등), 안전투자 혁신 사업(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등) 등		
☐ 평가 산식 : (재정지원사업 연계 건수) x (2점) [최대 20점]		
☐ 평가 기준 ○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(회)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연계 대상: 기관의 기술지도 현장 중 공단 재정지원사업 지급완료된 현장 ○ 공단에서 사전 평가 후 기관 방문 시 실적을 확인하여 점수 확정		
확인사항		
○ 재정지원설비 지급완료 확인서 등		

업무총실성

B. 유해·위험요인 개선(250점)

2. 유해·위험요인 개선	③ 기술지도 개선실적 (배점: 50점, 지도사: 10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
개선율이 90% 이상인 경우		☐ 1.0
개선율이 80% 이상 90% 미만인 경우		☐ 0.8
개선율이 70% 이상 80% 미만인 경우		☐ 0.6
개선율이 60% 이상 70% 미만인 경우		☐ 0.4
개선율이 60% 미만인 경우		☐ 0.2
평가취지		
기술지도 현장의 기술지도시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여부의 적정성을 평가		
평가내용		
☐ 평가 방법 ○ 평가년도 기술지도 현장 중 선정(기술지도 현장 수에 따라 2개소 이상) 하여 현장 방문 확인 - 방문현장은 기관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및 미만에서 각 1개소 이상을 우선 선정하되, 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대상 조정 가능 ○ 방문현장 우선선정 기준		
현장 방문 우선 선정 기준(예시) ①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또는 1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현장 ② 사망사고다발 기인물(개구부, 철골, 지붕 등) 보유 현장 ③ 고위험작업(철골, 지붕, 달비계, 고소작업대 등) ④ 평가 시점에서 공정율 40% 이상 80% 미만 ○ 건설현장의 기술지도결과보고서, 현재 공정, 건설기계·장비 등을 파악하고 유해·위험요인 및 개선 여부를 평가 ○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매년 판단기준(필수항목)을 선정하여 평가 * 판단기준(필수항목) 선정 시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와 협의 선정		
☐ 평가 산식 ○ 대상 현장을 방문하여 판단기준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- 판단기준에 대한 기술지도가 누락된 경우 “미개선”으로 평가 - 판단기준에 해당 없을 경우 “개선”으로 평가 ※ (예) A사업장 5개, B사업장 4개 개선한 경우 ⇒ (5+4)/14×100 = 64.2%로 “40점” 부여		

☐ 판단 기준

○ 선정 현장에 필수항목이 해당 없을 시 “적정”으로 평가

구분	필수항목	개선	미개선
합 계			
1	단부, 개구부, 철골 안전조치(추락)		
2	비계(이동식비계, 달비계, 사다리 등), 작업발판, 지붕 안전조치(추락)		
3	거푸집동바리(붕괴)		
4	건설 기계·장비 안전조치(충돌, 협착) * 굴착기, 고소작업대, 트럭, 이동식크레인 등		
5	용접장치, 전기설비, 위험물질·재·폭발 사고 예방 조치(화재/폭발) * 폭발성 물질, 인화성 물질, 급성 독성 물질		
6	그 밖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		
7	MSDS, 밀폐공간, 폭염 등에 대한 보건조치		

* 용접, 방수, 도장 공정 시 사용하는 주요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필요

○ 판단 기준 착안사항

① 현장 및 기술지도 개요가 현장과 불일치 여부 확인

②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내용과 현장 공정이 불일치 여부 확인

③ 기술지도 회차별 재해예방대책(향후 공정 포함) 기술지도 내용 및 이행이 미흡 여부

④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의 미흡 여부

⑤ 현장에서 보관 중인 보고서와 K2B에 등록된 보고서가 불일치할 경우 등

확인사항

○ 기술지도 현장 재해발생 현황,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등

업무총실성	B. 유해·위험요인 개선(250점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유해·위험요인 개선	④ 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의 적정성 (배점: 50점)
----------------------	--

평가 기준	평가결과
총 점	
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이 모두 타당한 경우	☐ 1.0
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5% 미만	☐ 0.8
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5% 이상 10% 미만	☐ 0.6
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10% 이상 15% 미만	☐ 0.4
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15% 이상	☐ 0.2

평가취지

기술지도 후 다음 기술지도 사이 실시예정인 향후 공사에 대하여 타당하고 적합한 재해예방 대책 수립 유도

평가내용

☐ 평가 방법

-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(최소 10개사 이상)하여 개선대책의 적정성 확인
 -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
 - ※ 샘플링 현장은 [B.2 ② 기술지도 개선실적]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
- 선정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중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개수를 산출하여 평가

☐ 평가 산식

-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 = $\frac{\text{재해예방대책 미흡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}}{\text{샘플링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}} \times 100$

☐ 평가 기준

미흡 기준

- ① 공정률이 90%미만임에도 향후 재해예방대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
- ② 진행 공정과 무관한 재해예방대책을 명시한 경우
- ③ ‘난간대 설치’, ‘교육 실시’ 등 단순 개괄적인 대책만 제시한 경우
- ④ 관리적 사항(교육 및 보호구 등)으로만 기재된 경우

확인사항

☐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,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

업 무 성 과

C. 업무성과(300점)

1. 재해 감소	① 사망만인율 감소 (배점: 200점)
평가기준	평가결과
총점 (배점 × 평가결과)	
사고사망만인율 100% 이상 감소한 경우	☐ 1.0
사고사망만인율 80% 이상 100% 미만 감소한 경우	☐ 0.8
사고사망만인율 60% 이상 80% 미만 감소한 경우	☐ 0.6
사고사망만인율 40% 이상 60% 미만 감소한 경우	☐ 0.4
사고사망만인율 40% 미만 감소한 경우	☐ 0.2
지표정의	
기술지도 효과성·현장 작동성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정량지표	
평가내용	
☐ 평가 방법 ○ 대상 : 평가대상 기간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도 현장 ○ 기관의 기술지도 현장 현황을 K2B에서 받아 산업재해 공식(잠정)통계로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하여 평가 ○ 사고사망자 중 “사고사망 12대 기인물에 의한 사망”이 50%이상일 경우 한단계 하향 - 공단 재해 통계자료(재해발생일자, 기인물 등) 및 해당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확인	
☐ 평가 산식 $\text{감소율} = 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} - A}{\text{평가대상기간 전 3년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}(A)} \times 100$ * A: 가중평균 연도별 비중(전년:전전년:전전전년 = 0.5 : 0.3 : 0.2) * 단, 2023년도 실적에 대한 2024년도 평가는 '23년 : '22년 = 0.6 : 0.4 적용 * 신규기관('24년 평가 한정), 기존 '22년 해당지표(B21 사고사망재해 발생빈도 감소성과)를 적용 $\frac{\text{기술지도 1만 회당 사고사망발생비율}}{\text{기술지도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}} = \frac{\text{기술지도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}}{\text{전체 기술지도 횟수}} \times 10^4$ * 공식통계(산재승인일 기준),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반올림	

○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율 예외 인정기준 준하여 평가

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율 예외 인정 기준	
① 평가대상기간 기술지도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“200”점 부여 ② K2B에 등록된 기술지도 현장이 1개소 이상 누락된 경우 “0점” 부여 ③ 신규 지정기관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 점수 부여 ④ 적용제외 : 업무상 질병,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, 체육행사, 태풍·홍수 등 천재지변, 방화, 폭력행위에 의한 재해 및 전년도 평가 시 반영된 사고사망재해 등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#1 제3호 라항 준용	
확인사항	
○ 기술지도 현장 현황(3개월 이상), K2B자료, 공식(잠정) 통계 등 증빙자료	

업 무 성 과		C. 업무성과(300점)	
2. 만족도 등		① 현장 만족도 (배점: 6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만족도 조사결과 95점 이상인 경우		☐ 1.0	
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		☐ 0.8	
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		☐ 0.6	
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		☐ 0.4	
만족도 조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		☐ 0.2	
지표정의			
기술지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현장의 만족도 평가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 ○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년도 수행현장 현황을 K2B에서 내려받아 평가 ○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결과 점수에 따라 평가 ☐ 평가 기준 ○ 안전관리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			
안전관리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 ① 조사된 모수가 30개 미만 또는 성공 조사건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-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를 초과한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 단계 상향 평가 -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 이하인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 단계 하향 평가 ② 기술지도 실적은 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(공단 포함)에 진정서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최하점수(10점)로 평가			
확인사항			
○ 외부 리서치 전문업체 설문조사 결과			

업 무 성 과		C. 업무성과(300점)	
2. 만족도 등		② K2B 시스템 활용 (배점: 4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적정율이 100%인 경우		☐ 1.0	
적정율이 99% 이상 100% 미만인 경우		☐ 0.8	
적정율이 98% 이상 99% 미만인 경우		☐ 0.6	
적정율이 95% 이상 98% 미만인 경우		☐ 0.4	
적정율이 95% 미만인 경우		☐ 0.2	
지표정의			
기술지도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입력 적정성 평가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 ○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 K2B 입력현황 기준으로 평가 ○ 평가대상기간 기술지도 현장 현황을 제출받아 K2B 입력현장과 비교 확인하여 누락 및 오류 확인 ○ 지연·누락 또는 오류가 없는 기술지도결과보고서의 적정한 입력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○ 평가대상기간 전체 기술지도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 ☐ 평가 기준 ○ 평가 산식 $\text{적정율} = \frac{\text{보고서 입력 적정 건수}}{\text{평가 년도 보고서 입력 실적(전체)}} \times 100$ ○ 평가 산정표			
적정 건수 판단 기준 ① 입력 적정 건수 - 기한 내에 기술지도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- 기술지도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경우 ② 방문 평가 시 기술지도 현장 입력 누락 및 오기입이 확인되는 경우 “0점”으로 평가			
확인사항			
○ K2B 전산 입력 결과, 기관의 기술지도 현장 현황 등 증빙자료			

가·감점 **D. 가감점(+100점 ~ -100점) (가점: 100점)**

1. 우수사례	① 기술지도 관리 우수사례, 포상(가점: +100점)																						
평가기준		최고점	평가결과																				
총점 (가점)																							
① 안전 관련 정부·지자체·공단 포상 여부		+40점																					
② 기관별 우수사례		+50점																					
③ 기술지도 미 이행 사실 통보 실적		+10점																					
지표정의																							
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관리 우수사례, 포상 등을 발굴·가점 반영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
☐ 평가 방법 ①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표창장 제출로 평가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4">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</th> </tr> <tr> <th>포상 내역</th> <th>가점</th> <th>포상수</th> <th>총점</th> </tr> <tr> <td>총 합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차관급 이상</td> <td>20점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차관급 미만</td> <td>15점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		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				포상 내역	가점	포상수	총점	총 합				차관급 이상	20점			차관급 미만	15점		
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포상 내역	가점	포상수	총점																				
총 합																							
차관급 이상	20점																						
차관급 미만	15점																						
※ 차관급 이상: 대통령, 국무총리, 장관, 서울특별시장, 광역시·도지사, 공단 이사장, 국회의원 ※ 차관급 미만: 고용노동청지청장, 공단(교육원장, 인증원장, 본부장, 지사장), 지자체(시·도·군·구) ※ 기관 또는 수행 인력이 두 가지 이상 지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																							
② <기관별 우수사례> 는 지역특성화 사업(맞춤형 기술지도), 기관만의 특성 있는 기술지도 방법, 기관의 제한된 역량 극복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* 등을 평가 * 기관만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계획 목표, 세부추진계획 및 절차, 기준, 결과, 성과 분석 등 명확한 목표와 실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인정(P→D→C→A, 문서화) * 평가방식은 현행('22년) 기술지도 우수사례 평가에 준용(변경 시 추후 공지) *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인정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인정 기준</td> </tr> <tr> <td> ① 동일분야: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타 기관 ② 타 분야 -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외 안전보건진단기관, 안전인증기관, 안전검사기관, 안전관리·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등록·지정된 기관 ③ 타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업무 관련 기관 인정 ④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·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제외 ⑤ 종합기술지원 실적은 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실적만 인정 </td> </tr> </table>				인정 기준	① 동일분야: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타 기관 ② 타 분야 -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외 안전보건진단기관, 안전인증기관, 안전검사기관, 안전관리·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등록·지정된 기관 ③ 타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업무 관련 기관 인정 ④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·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제외 ⑤ 종합기술지원 실적은 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	
인정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① 동일분야: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타 기관 ② 타 분야 -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외 안전보건진단기관, 안전인증기관, 안전검사기관, 안전관리·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등록·지정된 기관 ③ 타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업무 관련 기관 인정 ④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·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제외 ⑤ 종합기술지원 실적은 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						
③ <기술지도 미이행 사실 통보 실적>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의 미이행 사실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통보('22. 8. 18. 법 개정)한 실적을 평가 기관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 통보 건수 × (+2점) (최대 가점 +10점)																							
확인사항																							
○ 표창장, 우수사례 증빙자료, K2B전산실적을 현장 평가 시 확인 등																							

가·감점 **D. 가감점(+100점 ~ -100점) (가점: 100점)**

2. 행정처분	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(감점: -100점)				
평가기준		최저점	평가결과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
① 업무정지 처분 실적		-60점			
② 시정조치·경고처분 실적		-40점			
지표정의					
민간재해예방기관의 사망사고 감축 역할·책임의 명확화 및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법 준수 분위기 확산					
평가내용					
☐ 평가 방법 < 업무정지 처분, 시정조치·경고처분 실적, 기술지도 개선 미 이행 실적 >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평가 기준</td> </tr> <tr> <td> -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- 지부(출장소)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: 본사 평가 점수 반영 </td> </tr> </table>				평가 기준	-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- 지부(출장소)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: 본사 평가 점수 반영
평가 기준					
-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- 지부(출장소)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: 본사 평가 점수 반영					
①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서 평가,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※ (예시)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4개월을 받은 경우 실제 감점은 -80점(-20점×4개월)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-60점 부여					
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점수: (처분 개월 수) × (-20점) (최대 감점 -60점)					
②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·경고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정조치·경고 처분 건수 평가					
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점수: (처분 건수) × (-5점) (최대 감점 -40점)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평가 기준</td> </tr> <tr> <td> - 평가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처분 확정일을 기준 - 지부(출장소)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: 본사 평가 점수 반영 </td> </tr> </table>				평가 기준	- 평가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처분 확정일을 기준 - 지부(출장소)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: 본사 평가 점수 반영
평가 기준					
- 평가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처분 확정일을 기준 - 지부(출장소)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: 본사 평가 점수 반영					
확인사항					
○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본사 통보실적, K2B전산실적을 현장 평가 시 확인 등					